

제434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9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2.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3)

상정된 안건

1.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 1
2.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3)
..... 10

(17시10분 개의)

○위원장 권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전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생명안전기본법안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17시11분)

○위원장 권철승 의사일정 제1항 생명안전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범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서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안전에 관한 권리와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며,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사회 건설·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안전약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헌법 및 유사 기본법을 참조하여 안전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에서 ‘모든 국민’으로 수정하면서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

을 내용으로 추가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및 안전지수의 공표 제도를 이관하는 등 일원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인명·재산 피해가 크거나 사회·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한 안전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해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독립조사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철승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서범수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권철승 서범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아까 우리 법안소위에서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뭔가 잘못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생명안전기본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법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 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고 벌써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이거는 명확하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권철승 위원장님과 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서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심사되기 전에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의 입법예고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민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권철승 박수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박수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권철승 그러면 토론 발언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 저도 입법예고 먼저 나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어차피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헌법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게 공동체의 기본 원리인데 정부가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할망정 너무 속도전으로 한 건지 유감 표시하고요. 생명안전기본법안이 통과됨에 있어서 제가 소위에서 남겼던 당부의 말씀 다시 남깁니다.

차관님, 재난안전법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재난 안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제가 심사해 본 결과 생명안전기본법과 재난안전법에 많은 내용이 중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2개 법안이 체계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구하는 겁니다.

선의가 꼭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안전법과 재난안전법, 2개의 법률을 가지고 지자체는 이제 일을 해야 합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리실 거고, 계획을 세우실 거고 전국의 지자체에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재난안전평가도 있고 생명안전평가도 있고 이제 평가도 2개로 되고 계획도 2개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 현장에서 집행할 때 혼선을 최소화해야만 행정 역량이 효과적으로 응집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유념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의견도 들어가면서 각종 기준과 평가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즉각적으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비슷비슷한 기본계획·실시계획만 2개로 생기고, 비슷비슷한 영향평가만 2개로 생기고 또 감사를 받는 현장의 공무원들은 불안하니까 이중으로 항상 문서만 남기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생명안전이든 재난안전이든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의 효과적인 집중이 필요한 거고, 저희가 행정 역량이 무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행안부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시행 시기까지 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그 좋은 말씀을 꼭 반영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께서서는 박수민 위원님 지적이 현실화될 수 있는 우려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철승** 추가로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주호영 위원** 자구에 관한 문제인데요. 1조에서는 이 법은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일에 적용된다고 해 놓고 4조에서는 다시 모든 국민으로 해서 이 개념이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안전권의 범위에 관해서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의 논의가 소위에서 있었는데 한 법에서 두 개 표현이 서로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칙적으로는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경우에, 선언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람인 것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데는 국민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선 임시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법체계에 그것을 고민하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국민에게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차등하지 않는다면 앞에도 같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굳이 달리할 이유가 뭐 있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특별히 뭐 달리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하나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1조를 ‘국민’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각 주무부처에 조사특별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 기구와 이 조사기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놔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소위 때도 제가 설명드렸습시다마는 이 기구와 25개 조사기구는 병렬적으로 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법률에 있는 25개 조사기구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법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아니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사고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사고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의결이 돼 있다는 말씀……

○주호영 위원 원칙적으로 개별 조사위원회가 우선조사하는 게 규정돼 있습니까, 조문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여기에서는 이 조사위원회가 조사해야 되는 사항을 세 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안을 보고 조금 말씀드리면요.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18조 3항에 보시면 3항 1·2·3호가 나와 있는데 1·2·3호에 대해서 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호가 인명피해가 크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경우, 두 번째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고, 세 번째는……

○주호영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방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개별 기구의 조사가 우선한다는 원칙은 밝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중앙부처에 있는 각 부처의 특유한 전문 조사기구, 그 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이 기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구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이 조사가 들어가도 그 조사를 중단시킬 효력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3호를 한 번 더 봐 주시면 3호에는 그 조사기구들이 조사를 하고 있을 때는 이 조사기구는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3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취지에 그 조사를 우선으로 한다는 취지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 생각에는 3호의 해석상 당연히 다른 조사기구들이 될 수 있고 이 1·2호가……

○주호영 위원 그래요.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 기관 우선이라는 원칙을 표현해 놓고 해야지 이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런 간접적인 방식은 옳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방식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저희가 법안심사 할 때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심의를 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3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달성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내가 완결성을 따지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완결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 조사기구와 이 기구와의 관계를 설정해 놓는 것을 빼놓은 채로 이것은 빼고 다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됐고요. 3호에서는 그 조사기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를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먼저 조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1·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그사이에는 중복해서 조사하나요, 그런 경우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약에 의결을 해서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도 그 관계도 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두 개 조사가 중복돼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 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이것 하면 이 조사를 한다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개 조사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것은 조사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호영 위원 됐어요. 내가 시간이 끝났으니까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법은 법 자체로서 완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온 사람 입으로 완결성을 갖추려고 그래. 그때그때 해석이 다 다른 것을 자꾸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위원장 권철승 한 1분 더 넣어 드리십시오.

○주호영 위원 여기 피해자의 권리에 이런이런 권리를 가진다고 쪽 규정을 해 놓고 1·7·13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규정돼 있지 않잖아요. 이것 범위를 정

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위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문만 가지고 되나요? 무슨 권리, 무슨 권리인데 이걸 어느 범위에 인정할 것인지 자세한 것은 시행령에 더 구체적으로 정해 봐야 되지 않은가요? 이게 전부 권리·의무에 관한 건데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만 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일을 다 처리하겠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리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선언적인 권리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 특별히 규정이 필요……

○**주호영 위원** 아니, 권리가 선언적인 게 어디 있어요? 권리는 다 구체성을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당신들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이 법을 멋대로 해석해. 여기에 ‘권리’라고 하는 순간에는 다 구체적인 권리가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 구체적인 권리를 어느 범위에서 행사하게 하고 어떤 기준에 행사할지 모범에 근거를 가지고 나머지 자세한 걸 규정해야지 지금 다 머리 구구로 하는 거예요?

5조 한번 잘 읽어 보세요, 5조(피해자의 권리). 법에 ‘권리’라고 했는데 선언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고 어떻게 할지 하위규정이 전혀 없어, 구체적인 규정이.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에, 지금 3항인데 4항 정도에 이런이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범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가지고 시행령에 위임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나는 어찌 보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이 5조라고 생각해요. 5조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서 어떻게 집행하냐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논의할 때는 여기서 구체화되기 어려운 권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걸로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법안소위에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구체화하는 절차들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리고 위임이라는 것도 포괄위임은 안 되잖아요. 위임의 범위를 큰 줄기는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4항을 달아서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임의 원칙상.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여기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4항에서 만약에 위임을 해 주신다면 그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등으로 위임을……

○**주호영 위원** 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시행령은 포괄위임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면 포괄위임이에요. 이 조문에 있는 어느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려면 집행부서에서 큰 범위는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고 시행령에 위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 많은 조항들에. 제가 받은 느낌은 법이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요.

○**위원장 권철승** 본부장께서는 소위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그래서 아까 소위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이 내용 중에서, 권리라고 했던 것들 중에서 너무 불확정적이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권리들은 좀 제외를 하고 이 권리들을 구체화하는 조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구체적으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별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히 어떤, 집행하는 데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는…… 지금 특별히 여기에서 시행령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사실 잘 떠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기도 하고 아까 소위에서 논의된 과정에 이런 것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을 때 요구받은 기관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다른 법들에는 다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가지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참여할 권리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국가의 책무조항에 지금 피해자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권리조항이……

○**주호영 위원** 그게 몇 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6조입니다. 6조에 보시면 거기에 조사…… 6조 3항입니다.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 요구 및 조사 과정에의 참여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이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조사 요구권과 참여 요구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해야 된다는 국가의 책무조항을 구체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선언적인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래서 최소한 요구하면, 거절하면 거절하는 사유 같은 것을 적어서 통지하는 정도는 뒤야 약간의 실효성이 있지. 지금 이 6조 3항 가지고 신청했는데 아무 대답 안 해도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성실히 응했다는 흔적을 남겨야지. 이래서 못 해 줍니다, 그 정도는 들어가야 실효성 있는 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실히 응하는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이걸로 끝이야, 그냥. 끝인데 앞의 조항에 의하면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를 서면으로 많이 할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민원으로 간주돼서 민원처리법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법의 절차에 따르지만 이번에 특별히 조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성실히 해야 된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처리는 민원절차법에 따른다든지 후속 처리가 실효성 있는 게 나와 있어야지. 신청만 하고 답은 없고 끝나고 이게 뭐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여기에 선언적으로 어떤 식으로 규정을 안 하더라도 민원처리절차법에 따르는 것은 법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주호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적시해 놓는 게 좋지. 이런 요구들은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른 행정절차법에 다 있어요. 왜 여기에만 없고 본부장님 입으로 자꾸 절차를 설명하느냐고. 딱 보면, 모르는 사람도 보면 이것 되면 다음에는 이 절차로 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하겠구나 알아야지.

○위원장 권철승 오늘 답변하신 것처럼 하여튼 그 법 집행에 있어 가지고 다른 법과의 관계 등등을 잘 살펴서 집행하는 데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돼서 권리 구제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철승 주호영 위원님,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기록만 남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철승 맞습니다.

○주호영 위원 통과시키면, 아무것도 보완 안 된 채 통과시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권철승 그러니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지금 다른 법과 관련해서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절차들을 원용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호영 위원 저는 오늘 통과시킨다면 내가 막을 방법은 없는데 법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철승 법 전문가시니까, 꼼꼼하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도 걱정할 수 있는 일인데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것 꼭 오늘 통과시켜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본회의가 잡혀서 그러나?

○윤건영 위원 7일 날 본회의가 있어서요, 부의장님.

○주호영 위원 그래도 그것 조금 더 다듬으면 안 되나요?

○이광희 위원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발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난 지 오래됐는데 절차대로 좀 해 주세요.

○윤건영 위원 의견 듣고요.

○위원장 권철승 정춘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저는 발언 안 하려고, 토론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선 생명안전기본법이 첫 발의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 21대 국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고 소위에서도 공청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하지만 특히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있어서도 원안보다는 약간 후퇴했지만 저는 오늘 통과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호영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피해자 권리도 이 정

도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받을 권리, 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유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등등 이런 규정들이 저는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많은 소위 위원들이 많은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지체하지 말고 오늘 통과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권철승 더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제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정법안인 생명안전기본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제명부터 제1장 제8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장 제9조부터 제3장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4장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생명안전기본법안의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주민 의원, 한창민 의원, 용혜인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서 오늘 논의한 사항 중 제1조(목적) 규정 중 ‘모든 사람’을 ‘모든 국민’으로 수정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법안 통과를 지금 의결하는 거지요? 저는 반대로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권철승 알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속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과 참사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기존의 대응을 넘어 사고 이전에 미리 기준과 책임을 제도화하는 안전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임시회·폐회중이라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장이신 서범수 간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3) (17시37분)

○위원장 권철승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동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석에 배부해 드린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동구·서구 등 행정체제를 개편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자치구를 출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종전의 방위식 자치구명인 중구·동구가 제물포구·영종구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에서 유일하게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남게 되는 서구의 고유성·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의 적절성·필요성 여부, 절차적 타당성, 명칭 변경에 따른 재원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명칭 변경의 적절성·필요성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실무편람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의 판단 요건으로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 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서쪽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어 지리적 위치와 실제 행정구역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방위식 지명으로 인해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역사성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구의 경우 지리적 위치와 방위식 지명의 불일치 해소 및 지역의 역사성 및 정체성 반영 등의 사유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거쳐서 2018년 7월 1일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방위식 지명을 사용하던 중구·동구 또한 제물포구·영종구로 변경되는데 이에 맞추어 서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의 일관성 및 시기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둘째, 명칭 변경의 절차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바꿀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2025년 8월 14일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을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는 2025년 9월 9일에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를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여 명칭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6쪽의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추진경과와 7쪽의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입니다.

셋째, 명칭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는 약 4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비용은 보조금(시비)과 자체수입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 축적해 둔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이 데이터의 연속성 및 활용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추계는 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행안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지역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 국회에서 관련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에서 검단구로 분구되어서 검단의 국회의원이 된 모경종입니다.

서해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구요. 검토보고서에 잘못된 부분의 지적을 꼭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검토의견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잘못된 지도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구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 공유수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서구에 해당된다고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계속 쓰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수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의 검단구에 보면 뿔려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와 공유수면 관련된 내용을 마치 서구의 관할구역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꼭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철승 그러면 어디 소속인가요, 그 부분이?

○모경종 위원 공유수면입니다, 말 그대로.

○위원장 권철승 공유수면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법률안의 대체토론 이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축조심사를 거치지만 동 법률안은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되는 안건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간략히 축조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제정법안의 본문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안건은 제정법안으로 원칙상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나 주민 여론조사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인천 서구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 의결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미 거쳤다는 점에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교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권철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안과 인천광역시 서구의 새로운 지역 이미지 창출로 지역의 고유성 재정립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향후 정부는 법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서범수 제2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고동진 권철승 모경중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양부남 용혜인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해식 정춘생 주호영 채현일 한병도

○청가 위원(3인)

김성희 신정훈 이성권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박주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치분권국장 박연병

안전정책국장 서주현

사회재난정책국장 김영빈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법무담당관 이명구